

진행 절차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 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신청서 접수

인증신청 사업장은 신청서와 자체평가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실시)를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으로 제출

신청사업장 혜택

인증신청 사업장에 대해 각종 발간물 제공,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상담·교육 등을
우선 지원

인증절차

- ▶ 신청서 접수, 인증평가 관련 업무 수행 :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 인증심사위원회, 인증결정 관련 업무 수행 : 공단 본부



신청서 접수처

2014-보건-342

기관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본부 직업건강실	울산시 중구 중가로 400(북정동)	052-703-0637
서울지역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영등포동 2가)	02-6711-2855
서울북부지도원	서울시 중구 칠레로 42(불래동1가 10번지 우리빌딩 7,8층)	02-3783-8342
강원지도원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	033-815-1022
강원동부지도원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교동)	033-820-2522
부산지역본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부곡동64-31)	051-520-0586
울산지도원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8번길 5(남구 신정동 581-3)	052-226-0544
경남지도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용호동 7-3)	055-269-0545
경남동부지도원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양산노동조합청사 4층	055-371-7565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중구 국제보상로 648 호수빌딩 19, 20층	053-609-0540
대구서부지도원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87-36) 성안빌딩 5층	053-650-6842
경북동부지도원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42
경북북부지도원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임수동)	054-478-8023
충북지역본부	인천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구산동)	032-510-0531
경기남부지도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90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3층	031-259-7136
경기북부지도원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031-828-1933
경기서부지도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고잔동)	031-481-7532
경기동부지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쇄골로 17번길 3(금곡동 106-2) 소곡회관 2층	031-785-3366
부천지도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대산프라자 3층	032-680-6523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광주무역회관빌딩 8층)	062-949-8757
전북지도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전주지방노동청 4층)	063-240-8544
전북서부지도원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오식도동)	063-240-8555
전남동부지도원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선원동 1285)	061-689-4932
전남서부지도원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전남개발공사 B/D 7층)	061-288-8707
제주지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064-797-7511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문지동)	042-620-5634
충북지도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가경동) KT 3층	043-230-7142
충남지도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6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불당동)	041-570-3430



2014년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안내



인증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본부 직업건강실

052)703-0636



인증제도의 개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인증이란?

공단이 인증신청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뇌·심혈관질환 예방, 감정노동 등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예방,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조직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활동

추진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6호(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사업장에 대한 인증

수수료 및 유효기간

인증신청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3년

인증사업장 명단 공고

공단에서 연 1회 이상 언론매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증 사업장 명단 공고



인증결정 및 혜택

인증 평가

공단에서 제시한 인증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단계, 실천단계로 평가

인증 결정

- 1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계'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
- 2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작업관련성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

※ 작업관련성질환 : 뇌·심혈관질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등

- 3 인증 신청일을 기점으로 최근 1년간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여 민원(언론 보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

인증사업장 혜택

- 1 인증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보건분야(건강증진 부분)에 관한 감독 유예 가능
- 2 인증받은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정부 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 3 인증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 추진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승급 등 자체포상 실시
- 4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 지원 (300인 미만인 경우)
- 5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50인 미만인 경우)

인증서(인증패) 교부

인증결정 사업장에 인증서(인증패) 교부

인증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분 야	가중치	평가항목
계	100	
체제구축	15	노사공동추진, 경영방침, 종합계획, 구성 조직 및 인력, 관련시설, 협력업체 관리, 취약계층 관리, 장시간 근로
인식수준	15	경영자, 건강증진활동 추진자, 근로자, 인식수준
조직문화	10	정보공유, 게시판 운영, 제언제도, 참여도, 지속참여 유도도, 보건교육
건강증진 활동	25	뇌심혈관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 교대작업자 관리, 야간작업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25	건강증진활동 세부 프로그램 운영 (준비, 실행, 평가, 지속추진)
재해를 관리	10	작업관련성 질환자 발생추이

평가 결과

단 계	내 용
우 수 (75점 ~ 100점)	• 노·사가 근로자건강증진과 기업목표와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노·사의 건강증진활동 인식수준이 높고 경영자의 지원과 집중화를 통해 근로자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실 천 (75점 미만)	• 건강증진활동을 통한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나 경영자의 지원이 적고 비정기적인 활동으로 추진하고있음 - 건강증진활동을 통한 효과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경영자의 지원이 적고 운영체계가 없음

※ 구체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직업건강 ▶ 근로자 건강증진 ▶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